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243
----------	------

2022. 06. 1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5. 25. 이성배 의원
2. 회부일자: 2022. 5. 27.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2. 6. 14.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이성배 의원)

### 1. 제안이유

- 저층주택이 밀집한 고밀 저층주거지의 경우 생활기반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커 공급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공급 우선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저층주거지도 우선 공급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

## 6조제2항제6호)

###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저층주거지역도 ‘생활기반시설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성배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현재 서울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9)”<sup>1)</sup>에서 정한 11가지 마을단위시설과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지역생활서비스시설<sup>2)</sup>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up>3)</sup>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등을 포함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등의 공급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11개)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7개)로 구분하고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53종의 기반시설 중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인프라시설을 말하며, 권역생활서비스시설과 지역생활서비스시설로 구분됨.

권역생활서비스시설은 이용인구 10만인 단위 수준의 시설로서, 공공부문에서 주로 공급하는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말하며,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은 지역주민의 도보권 내 일상생활 편의시설로서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말함.

3)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조례 제2조제2호)

2030 생활권계획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10분동네 생활SOC	쌈지공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노인정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	놀이방 어린이집	학교운동장 생활체육관

제정하여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sup>4)</sup>이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우선공급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등이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도 선정은 가능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우선공급대상 지역 외 적용 사례지역은 2개소에 그치고 있음.<sup>5)</sup>(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 참고로, 이 조례에 따른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은 2019년 13개 자치구에 선정된 13개 생활SOC 시범사업 대상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6개 자치구에서 24개소를 설치 완료 또는 설치사업을 진행 중임.(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저층주거지도 “10분동네 생활SOC 우선공급대상 지역”

4) (주거재생과-1770, 2019.2.15.), “노후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계획”

5)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6.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과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우선공급대상 지역 선정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됨.

- 한편, 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10분동네 생활SOC 공급사업”과는 별개로, 정부(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생활SOC 3개년(2020~2022)계획”에 근거한 “생활SOC 복합화사업”<sup>6)</sup>(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빈집 활용 생활SOC 조성사업”<sup>7)</sup>(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도 균형발전본부(균형발전정책과/주거환경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므로,
- 이 조례에 근거한 “10분 동네 생활 SOC사업”과 동일 지역에 유사 시설이 중복해서 공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SOC 공급·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6) 두 개 이상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 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복합화하여 공급.

서울시는 2020년 총 26개소 2,402억원, 2021년 총 12개소 1,709억원, 2022년 총 14개소 1,977억원 규모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임.

7)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SOC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을 근거로 시행 중에 있음.

2019~2020년까지 총 9개소 26억9천만원, 2021년 47개소 61억 1천만원, 2022년 13개소 6억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복지공간 및 사회문화공간, 녹지공간,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